

- 유사한 성격의 지방세(주행분 자동차세) 및 담배에 붙는 다른 제세부담금 (개별소비세, 관·부가세, 건강부담금)과의 운영 불일치로 납세자 혼란 우려
⇒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하게 납세담보 면제

적용 요령

-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 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

|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9조(담배소비세 납세담보금액 면제에 관한 적용례) 제7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2 개정 조문